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·운영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·운영 지원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57
----------	-----

2022. 12. 16.(금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김정일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22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2월 5일

-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정일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발전을 증진 하려는 것임

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협조 및 지원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 (김대진 수석전문위원)

### 가. 제출배경
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41조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발전을 위하여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,
- 「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·운영 지원 조례」 제정을 통하여,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는 “청소년수련시설”을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로 용어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- 안 제3조는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
  -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주로 공익활동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시 방식의 투명성 제고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**안 제4조**는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,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,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,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등으로 규정하였으며,
  -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 이는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  
- **안 제5조**는 안 제5조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규정한 것임.
  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」제24조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이를 수행할 때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  
-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립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 특히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·운영 지원 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·운영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청소년수련시설”이란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, 설비,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 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립 및 운영)** ① 충청북도를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(이하 “시설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.

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.

제4조(시설협회의 사업 등)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시설협회의 회원인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
2.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·권익증진 및 교류사업
3.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
4.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
5.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·연구·지원사업
6.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5조(협조 및 지원) 시설협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령

## □ 청소년활동 진흥법 (시행 2020. 11. 20.)

제10조(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)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# 1. 청소년수련시설

- 가. 청소년수련관: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- 나. 청소년수련원: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- 다. 청소년문화의 집: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·문화·예술 중심의 수련시설
- 라. 청소년특화시설: 청소년의 직업체험, 문화예술, 과학정보,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
- 마. 청소년야영장: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,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
- 바. 유스호스텔: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·설비와 부대·편익시설을 갖추고, 숙식편의 제공,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(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·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)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



2. 청소년이용시설: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

**제40조(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)** ①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 및 위탁운영 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·발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(이하 “시설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1. 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
2. 청소년지도자의 연수·권익증진 및 교류사업
3.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 운동
4.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·연구·지원사업
5.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
6.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시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1조(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) ①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 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제정안 비용추계서**

**1. 사업개요**

-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발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**2. 비용 발생 요인**

-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 및 운영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 시설협회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사업비 등

**3. 관련조문**

- 안 제4조(시설협회의 사업 등)

**4. 비용 추계결과**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3년~2027년까지 5년으로 하며, '22년 추진 사업기준 및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업을 추계

나. 추계결과 : 연간 10,000천원, 향후 5년간 50,000천원 소요

-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: 10,000천원 × 1식 = 10,000천원

- '22년 추진 사업비 기준하여 추계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**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 : 붙임참조**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
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사업	5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

**6. 작성자 :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남희**

## 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					
-						
세 출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사업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재원 조달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지방세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						